202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(학생용)

Ⅰ 관련 근거

○ 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제6장 제2절(석·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)

○ 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별지 제29호 서식(학위논문 작성지침)

Ⅱ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

구분	세부일정	비고
1.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	**2026. 4. 3.(금)까지**	학생→학과
2.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	**2026. 4. 23.(목)**	대학원혁신실 및 학과
3. 논문발표 및 심사	**학과 일정에 따름**	학과
4.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	**2026. 7. 3.(금)까지**	학생→학과
5.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	**2026. 7월 중**	대학원혁신실
6. 최종논문(인쇄본·파일) 제출	**2026. 8. 4.(화)**	학생→중앙도서관

Ⅲ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

1.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(학생→학과) — 2026. 4. 3.(금)까지

○ **(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)**

- 학위청구 자격시험(종합·외국어 시험)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
- 2026년 8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
- 학위청구 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학과(부)나 전공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함

○ **(심사용 논문 접수)**

-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
- 학위논문 위조, 변조, 표절,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하고 학과 또는 대학에서 보관
  - ▸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통과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  - ▸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(Turnitin)

※ 도서관 홈페이지(https://lib.pusan.ac.kr)– 연구·학습지원 – 논문작성지원 – 연구윤리/표절예방

- 제출서류 및 심사료

제출서류(심사대상자 → 학과사무실)	심사료	
	석사	박사
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	100,000원	300,000원
② 심사용 논문(석사 3부, 박사 5부)		
③ 이력서 6부 ※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부, 본부 제출용 1부		
④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	각 학과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 ※ 지난 학기 "**심사 연기자**"는 **심사료 납부 대상 아님**	
⑤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부		

2.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(대학원혁신실 및 학과)

2026. 4. 23.(목)

○ 추천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함

○ 심사용 논문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 등은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송부

○ 위촉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 이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(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신청)

3. 논문발표 및 심사(학과)

학과일정에 따름

4.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(학생→학과)

2026. 7. 3.(금)까지

○ 심사대상자는 **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**을 학과사무실로 제출

○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 이후 논문 제목 등의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

5.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(대학원혁신실) — 2026. 7월 중

○ 대학원혁신실에서 별도 시행

6. 최종논문(인쇄본, 파일) 제출(학생→도서관) — 2026. 8. 4.(화)

○ **최종논문(인쇄본)**

- **제출일시: 2026. 8. 4.(화) 09:30 ~ 17:30 (당일에 한함)**
- **제출장소: 중앙도서관 1층 로비**
- **제출부수: 3부 (단, 법학과는 4부), 인준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원칙**

○ **논문 파일**

-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: 도서관에서 '26. 8. 말경 별도 공문으로 안내

7. 논문 공표 — 박사학위자만 해당

○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(「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제60조)

Ⅳ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

○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**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**

○ **논문제목**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**최종인준날인 논문**과 **반드시 일치**하는지 확인

○ **1심**이 **진행**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,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**심사료**가 **환불되지 않음**에 유의

Ⅴ 의학,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[관련: 학사과-2287(2005.04.28.)]

○ **논문제출 요건(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)**

-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화(박사에 한함)
  - ▸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[SCI(E)급] 1편 이상 게재(주저자 또는 지도교수가 주저자인 경우 제2저자이어야 함)

- 공개발표 의무화(석·박사 공통)
  - ▸ 학위청구논문작성 계획서를 논문제출 6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학과장(전공주임) 주관 하에 공개 발표, 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에 학위청구논문요지 공개 발표

※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논문은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 종합심의 대상에서 제외

- 학위청구논문의 영문 작성 적극 유도 및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대학 자체에서 인센티브 부여

○ **논문심사 요건(200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부터)**

-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타교 소속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**[폐지]**대학원행정실-2510, 2511(2017.06.26.)의거

-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의무화

-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종합심의 후 대학본부로 최종심의 의뢰

○ **박사학위 청구 논문 학술지 게재 의무화(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)**

- 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는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, SCI(E)급 이상 국제학술지 게재는 2년 이내로 함

- 기간 내 미공표 시는 일정 기간 박사과정 지도학생 배정 제외

- 학위청구논문과 관련된 연구내용과 성과 학술대회 발표 의무화